

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(2분기)

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6월 7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
- 모집기간 : 2024. 06. 07.(금) ~ 06. 27.(목) 17시
- 지원대상 : 도내 소재¹⁾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²⁾
 - 1) 제조시설(공장)이 도내에 소재
 - 2) 「중소기업 확인서」상 “소기업” 명시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)
- 지원규모 : 금40,000,000원(사천만원) 한도 내(30개사 정도)
- 지원내용
 - ①시험분석(최대 2백만원), ②품질인증획득(최대 10백만원) 中 택 1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 지원
 - 소요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
구분	① 시험분석지원		② 품질인증획득 지원			
	내용	업종	A형		B형	
지원 내용	▪ 위해요소, 세균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 ▪ 영양성분 분석 ▪ HACCP 유효성 검사	식품제조 및 가공	KS, KC, K마크, Q마크,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, GR마크, 녹색인증 (기술/제품), 환경표지인증, 식품안전관리인증 (HACCP제품인증)		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GS(S/W), ICT융합품질인증, 성능인증(EPC)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, 혁신제품(FT1-2·3), 조달우수제품인증	
	▪ 세탁 견뢰도,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	의류제조				
	▪ 제품 성능,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평가	모든업종				
지원 한도	기업당 최대 2백만원		한도	건당 최대 3백만원	한도	건당 최대 10백만원
			기업당 최대 10백만원 * A, B유형 중복 신청가능			

2 세부지원 내용

□ 지원제외대상

-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서 각 3회 이상 수혜기업
- [세부사업간 중복지원불가] 「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(혁신기반 공정개선, ESG공정개선)」 당해연도(2024년)내 선정 및 지원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
-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

□ 시험분석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2백만원
- 지원내용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
 - 소요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- 세부사항

구분	내용	업종
지원내용	▪ 위해요소, 세균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 ▪ 영양성분 분석 ▪ HACCP 유효성 검사	식품제조 및 가공
	▪ 세탁 건뢰도,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	의류제조
	▪ 제품 성능, 품질 또는 성분 분석 신뢰성평가	모든업종
지원제외	▪ 원·부자재 시험분석 : 직접 생산 및 가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원·부자재 ▪ 수질분석 ▪ 참고용 검사, 자가품질검사 : 대외 활용목적이 아닌 내부 활용목적이 검사분석 (대외 활용목적 증빙 : 거래처 및 제출기관의 요구 및 회신자료 첨부) ▪ 순수 분석 외 비용(부가세, 기본료, 전처리비, 우송료, 검사자 인건비 등)은 제외 ▪ 참여기업이 직접 시험분석을 의뢰하지 않고, 제3자가 시험분석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분석	

- 인정범위
 - 시험분석 성적서 기준 2023. 12. 1. 이후 취득 건
 - 2023. 12. 1.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既수혜건 제외
 -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, 1개 기업만 지원

□ 품질인증획득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대 10백만원
- 지원내용
 - 인증 시험/평가비용(공인인증시험/평가기관), 획득 비용(인증기관)
 - 신청금액에 따른 선정비용의 80% 지원(VAT제외, 기업부담금 20%)
 - 연간 최대 2회 지원,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
 - 지원한도 내에서 A, B유형 중복 신청가능
- 세부사항

구분	인증 범위	지원 한도
A형	KS, KC, K마크, Q마크,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, GR마크, 녹색인증(기술, 제품), 환경표지인증,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제품인증)	건당 최대 3백만원
B형	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GS(S/W), ICT융합품질인증, 성능인증(EPC)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, 혁신제품(FT1·2·3), 조달우수제품인증	건당 최대 10백만원
지원 제외	▪ 참여기업이 직접 획득하지 않고,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인증획득 ▪ 인증획득을 위한 용역대행 컨설팅 비용 ▪ 공인시험분석, 인증서 획득 이외의 제반비용(시험평가 전문인력 인건비, 교통비, 면허세 등) ▪ 既획득 인증서의 자격기간의 연장, 규격 추가 등	

- 인정범위
 - 인증서 기준 2023. 12. 1. 이후 취득 건
 - 2023. 12. 1.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既수혜건 제외
 -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, 1개 기업만 지원

3 문의처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06. 07.(금) ~ 06. 27.(목) 17:00 까지(기한엄수)
- 접수처 : 온라인접수(E-Mail : jbbarights@naver.com)
- 문의처 : 기업성장팀 배정은, 김찬미 담당관 (063-711-2072, 2164)

E-Mail 제출 시 유의사항	▪ 신청서는 회사직인 날인, 대표자 서명/직인날인 후 PDF 파일로 제출
	▪ 파일명 : (예시1) 기업명_소기업_시험분석지원신청서.pdf
	▪ 파일명 : (예시2) 기업명_소기업_품질인증획득지원신청서.pdf

4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 고
1	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	서식1호
2	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	서식2호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서식3호
4	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서식4호
5	품질인증획득 수행 결과서 1부	서식5호 품질인증 필수
6	사업자등록증 1부	필수 (지원자격확인용)
7	중소기업 확인서 1부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)	
8	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(건축물 용도: 공장/제조업소 필수) - 제조시설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제출 - 제조시설 500㎡ 미만 : 건축물관리대장(갑) 제출 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	
9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	
10	전년도 12/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	
11	통장사본(사업자용) 1부	필수 (지출증빙)
12	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	
13	세금계산서(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)	
14	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(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)	
15	시험성적서 및 인증서(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)	
16	2021년~2023년 재무제표 각 1부	필수(평가자료)
17	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(수출 및 요청 증빙, 조달청 공고문, 재인증·연장인증서, 정기검사 공문,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)	시험분석 필수 (평가자료)
18	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 증빙자료(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필수) (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, 부설연구소 지정 등)	품질인증 필수 선택 (우대가점)
19	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	선택(평가자료)

5 선정 및 사업비 지급
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
- 평가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구성
- 평가내용 :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
- 평가기준
 - 정량평가 80점, 정성평가 20점(가점 10점)
 - 항목별 득점을 종합한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 선정(동점시 업력낮은 순 선정)
 -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① 시험분석지원

평가부문		평가항목	배점	비고
정량평가	제조업 전업율 (제품매출비율)	▪ 50% 이상 : 30점 / 30% 이상 : 25점 / 30% 미만 : 20점	30	
	분석목적	▪ 수출 : 30점 / 조달등록 : 26점 / 재인증·인증연장 : 22점 법정 정기검사 : 18점 / 거래처 제출 : 15점 / 기타 분석목적 : 10점	30	
	기업역량	▪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 보유 - 3건 이상 : 20점 / 2건 : 15점 / 1건 : 10점 / 0건 : 5점	20	
소계			80	
정성평가	시험분석적정성	▪ 분석내용의 적정성(분석목적 및 내용 일치 여부)	4	
	시험성적결과	▪ 성분 및 성능 시험분석 결과 기준적합도 충족 여부	8	
	시험분석 활용효과	▪ 신제품 개발, 품질개선, 제품인증, 신규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 등 ▪ 매출 증대 가능성	8	
소계			20	
합계			100	
우대가점		▪ 최초 사업참여 신청	4	
		▪ 최근 3개년('21~'23년) 평균매출 3억 이하	3	
		▪ 최근 3개년('21~'23년) 연속 20% 이상 매출 감소	3	
총점			110	

※ 분석목적이 다수인 경우, 신청 건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건으로 적용

② 품질인증획득 지원

평가부문		평가항목	배점	비고
정량평가	제조업 전업율 (제품매출비율)	▪ 50% 이상: 35점 / 30% 이상: 30점 / 30% 미만: 25점	35	
	신규 인증 획득	▪ 신규획득 인증 종류 2종 이상 : 15점 / 1종: 10점	15	
		▪ 인증제품 종류 3종 이상 : 15점 / 2종 : 13점 / 1종 : 10점	15	
	기업역량	▪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) 보유 - 3건 이상: 15점 / 2건: 13점 / 1건: 10점 / 0건: 7점	15	
소계			80	
정성평가	인증획득의 적정성	▪ 인증취득의 필요성	4	
	기술경쟁력	▪ 인증취득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	8	
	사업성 및 활용효과	▪ 인증활용계획의 구체성 또는 사업화 전략 ▪ 매출성과 증대 및 수출 등 지역 경제 기여도	8	
소계			20	
합계			100	
우대가점		▪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우수기업 지정(2024년 유효) (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, 부설연구소 지정 등)	4	
		▪ 최근 3개년('21~'23년) 평균매출 3억 이하	3	
		▪ 최근 3개년('21~'23년) 연속 20% 이상 매출 감소	3	
총점			110	

○ 선정결과

- 우리원 홈페이지(jbba.kr)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- 개별 선정결과 이메일 또는 문자안내

○ 사업비 지급

- 선정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(기업부담금, 불인정 및 불가 항목 제외)
- 선정기업 평가 후 자료보완 및 필요시 현장점검 확인 완료 후 지급

○ 추진일정(안) ※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시험·평가 및 인증획득 (23. 12. 1. ~ 24. 6. 27.) · 시험/평가 의뢰 및 완료 · 비용 지급 완료 · 시험분석/인증획득 완료	▶	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(6. 7. ~ 6. 27.) · 참여기업 → 우리원 · 사업신청서 ·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	▶	서류검토(6월 말~7월 초) · 자격요건 확인 ·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여부, 중복성 확인
			↓	
지원금 지급(8월 초) · 우리원 → 선정기업	◀	심사평가 및 선정(7월 중) · 지원 적정성 및 타당성 · 지원 제외항목 선별 · 사업비 지급액 결정	◀	서류보완(7월 초) · 우리원 → 참여기업 ·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요청

6 유의사항

- 신청서류는 마감일 17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업에 추가자료 요청 및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,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 처리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*이 부과됨.

* 제재부가금

-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[받은 지원금]의 5배
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[받은 지원금]-[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])의 3배
-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[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]의 2배

-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.
- 사업참여업체는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.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.
- 시험분석 또는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,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취득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며, 신청한 다수건 중 포함되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대행업체 또는 용역업체 실시 건은 불인정 처리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됨. 끝.

참 고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

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	E(E36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